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55

발의연월일: 2021. 1. 26.

발 의 자 : 윤준병ㆍ기동민ㆍ김민철

김성환 · 김윤덕 · 노웅래

민형배・양이원영・이수진(비)

이용빈 · 인재근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비상임인 조합장에 한해서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조합 이사들의 경우에도 조합 내에서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한 번에 한해 연임이 허용된 비상임인 조합장도 상임인 조합장과 동일한 연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상임인 조합장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0 조 등).

법률 제 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이사"를 "조합원인 이사"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하되"로,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을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섯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8조 전단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조합장 및 이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조합장 및 이사에 대하여 제5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u>이사</u> 의 임기는 4년으로 <u>하고,</u>	<u> 조합원인 이사하</u>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u>되</u>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연	<u>두 차례만</u>
임할 수 있고, 상임인 조합장은	
<u>두 번만</u> 연임할 수 있다. <u>다만,</u>	<u><단서 삭제></u>
<u>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u>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	
회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	
<u><신 설></u>	② 제1항의 이사를 제외한 이
	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
	선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u><신 설></u>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
	<u>다.</u>
<u> <신 설></u>	④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
	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
	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u>수 없다.</u>
② <u>제1항의</u> 임원의 임기가 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료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	<u>정에 따른</u>
단서를 준용한다.	

③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이사 및 감 사의 임기는 제1항(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설 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 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조합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 의 종전 임기의 남은 임기가 2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남 은 임기를 그 조합장의 임기로 한다.

④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 중인 조합 장·이사 및 감사의 남은 임기 가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 인 경우에는 제1항(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 로 한다.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 저 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제1

<u>⑥</u>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
,
<u>⑦</u>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168조(준용규정)

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 항·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 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 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 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 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 지. 제46조제6항·제7항. 제50조 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53조, 제53조의2(제6항을 제 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 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 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제3 항·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 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 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 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 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 원"으로, "조합장"은 "회장"으

제50조
제5항
·

로,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 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는 "7개 조합 이상이"로. 제40조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1호부 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는 "제1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로. 제46조제6항 중 "이사"는 "이사·사업전담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3 조제1항제1호 중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은 "조합장인 사람 또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 행하는 사람"으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38조제 1항제8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 38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로, 제60조제9항 중 "사업손실보전 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은 "사 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으로. 제6 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 제4호"는 "제138조제1항제5호" 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 항제2호나목"은 "제138조제1항

제2호가목"으로, 제66조제2항 중 "신용사업 부문 회계와 신 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회계" 는 "각 사업별 회계"로, 제73조 제1항 및 제3항 중 "조합장"은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 동조합등기부"는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등기부"로 본다.

•